

	보 도 자 료	
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/ 금융감독원 법무실		
책임자	권대영 금융정책과장 (2156-9710)	담당자	김영근 사무관(2156-9712)
	박홍석 법무실 국장 (3145-5910)		양진태 법무3팀 팀장(3145-5915)
배포일	2015.12.15.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대

제 목 : “금융규제개혁” 및 “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” 을 제도화한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추진

1.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배경

- 금융위·금감원은 금융개혁 과제로서 “**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**”(6.15), “**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**”(9.18) 발표
 - **법령규제 제·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기준***을 제시
 - * ①사전규제→사후책임 강화, ②선진사례 벤치마킹, ③오프라인→온라인, ④포지티브→네거티브, ⑤업권별·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어 경쟁촉진, ⑥금융사고로 강화된 규제정비, ⑦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
 - **행정지도, 감독행정에 대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**,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, **옴부즈만, 실태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 제도화**
-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금융당국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개혁의 **상시화**가 필요
- 이에 따라 **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** 금융위, 금감원이 **규제·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** 규정화를 추진

2.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정 추진경과

- ① 민간 전문가 8인으로 “**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**”를 구성*하여, 총 3회(10.23, 11.11, 12.2) 회의 개최

* 위원장 :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- 업계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**실무 TF**를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 추진

- ② 7개 업권협회* 주축로 “**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**” 개최(11.26)

* 은행연합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금융투자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

< 제정위원회, 공청회 주요 의견 및 규정반영 내용 >

주요 의견	규정 반영내용
1. 자율규제 형식을 띤 그림자규제에 대한 통제	✓ 자율규제 개입금지 규정화(§ 7②)
2.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간의 모호성 해소 필요	✓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례 축적을 통해 구분기준 정립
3.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 개입금지 범위 명확화	✓ 개입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정 (§ 7⑥)
4. 위기상황에 대한 규정 적용 유보는 엄격히 제한	✓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으로 한정 (§ 3)
5. 집행력 담보를 위한 제재조항 마련	✓ 인사조치 등 상벌규정 마련 (§ 23②)
6. 옴부즈만 제도 운영 시 익명성 보장 강화 필요	✓ 신고인 정보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 (§ 18③)
7. 규제합리성 확보를 위해 자체규제심사위 실효성 제고	✓ 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로 구성 및 논의결과 공개 (§ 17)
8. 행정지도 존속기간 단축 필요	✓ 법률규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존속기간 3년→2년 단축 (§ 13①)

3. 규정 주요 내용

- ① **법령규제 제·개정 원칙**(안 제5조)

- 규제 신설·강화 시 **국제수준**과의 정합성, **네거티브 방식** 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**검토 의무화**

② 행정지도의 원칙(안 제7조)

-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(제2항)
- ②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(제4항)
- ③ 인사, 가격,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(제5,6항)

③ 행정지도 절차(안 제8조 내지 제12조, 제14조)

- 구두지도 금지,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·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,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, 금융위 사후통제 등

④ 규제·감독 상시개선 시스템(안 제17조 내지 제23조)

-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, 음부즈만,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,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, 포상·인사조치 등

4. 향후 일정

① 외부 의견청취·반영(12.10~12.17)

※ 의견제출처

- 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
(전화) 02-2156-9712, (팩스) 02-2156-9709, (이메일) kant@korea.kr
- ② 금융감독원 법무실
(전화) 02-3145-5917, (팩스)02-3145-5927, (이메일) junhyungkim@fss.or.kr

② 금융개혁회의 심의(12.23)

③ 규정 시행('16.1월 예정)

- [첨부] 1.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조문(사전예고 공고문)
 2.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설명자료
 3.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조문별 설명자료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